

# 충남도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

제정[2018.02.28. 규정 제543호]

학칙개정[2019.01.01. 규정 제562호]

학칙개정[2019.10.01. 규정 제562호]

개정[2020.02.28. 규정 제639호]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(대학운영 만족도)를 실시하고,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품질의 지속적인 유지·개선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범위)**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범위는 대학의 사명과 책무, 교육과정,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, 산학협력, 교육성과, 학생지원, 교직원지원, 재정 및 시설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시행한다.

**제3조 (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대상)**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대상은 재학생, 졸업생, 학부모, 산업체, 교원, 직원, 지역주민 등 교육 참여자 및 관련자로 한다.

**제4조 (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시기)**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각 분야 별 연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마감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조사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.

**제5조 (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부서)**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총괄계획과 운영은 기획홍보처에서 실시한다.

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필요에 따라 대학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 (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의 검토)** ① 대학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.

② 대학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총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이행 결과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7조 (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활용 절차)**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총괄 및 세부계획은 기획홍보처에서 총장에게 보고 후 실시한다.

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검토를 거

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대학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④ 당해 학년도의 평가결과는 다음 학년도 업무계획, 예산수립, 제규정의 개정, 대학 운영의 개선 및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한다.

**제8조 (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공유)**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관련 학과 및 부서에게 공유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**부칙(규정543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칙 <2019.1.1.>(충남도립대학교 학칙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①부터④까지 생략

⑤충남도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1항, 제6조1항 중 "기획교무처"를 "기획홍보처"로 한다.

⑥부터⑥까지 생략

### **부칙(규정639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